

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 7~8월 일부 계곡 한시적 이용 허용 및 야영·취사·흡연 등 금지행위 집중 관리
- 국립공원공단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인원 5,275명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 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 내 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정비 이후 재발 방지와 공원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와 같은 주요 지점에서 음주행위 등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질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곡 등 수변지역의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 휴가철 기간 중 탐방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전국 15개 국립공원 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만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출입 허용 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및 위법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와 정상부 등 주요 거점에 깃발 및 현수막을 활용해 집중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누리집 (knps.or.kr) 등을 통해 한시적 계곡 출입허용 구역 안내 및 탐방객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 휴가철(7~8월) 중에 적발된 국립공원 내 위반행위는 총 2,48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 808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654건, 취사행위 364건, 오물 투기 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미래세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 이용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관련 단속사진.
 2. 공원별 여름 성수기 기간 및 현장관리인력 현황.
 3. 여름 성수기 한시적 허용행위(계곡출입) 장소 및 기간.
 4. 과태료 부과 기준.
 5.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책임자	부 장	차수민 (033-769-9500)
		담당자	계 장	권순혁 (033-769-9504)



설명: 계곡 무단 출입 단속



설명: 계곡 무단 출입 단속



설명: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단속



설명: 무인도서(출입금지) 출입 단속

붙임 2**공원별 여름 성수기 기간 및 현장관리인력 현황**

공원명	성수기 기간		현장관리인력 (연인원)
계	19개 공원		5,275명
지리산	2026. 7. 11. ~ 8. 16.	37일	450명
계룡산	2026. 7. 4. ~ 8. 17.	45일	360명
한려해상	2026. 7. 13. ~ 8. 21.	40일	383명
설악산	2026. 7. 11. ~ 8. 17.	38일	300명
속리산	2026. 7. 13. ~ 8. 30.	48일	210명
내장산	2026. 7. 1. ~ 8. 31.	62일	556명
가야산	2026. 7. 18. ~ 8. 23.	37일	165명
덕유산	2026. 7. 13. ~ 8. 17.	36일	297명
오대산	2026. 7. 11. ~ 8. 17.	38일	185명
주왕산	2026. 7. 19. ~ 8. 17.	30일	150명
태안해안	2026. 7. 11. ~ 8. 23.	44일	82명
다도해해상	2026. 7. 11. ~ 8. 21.	42일	418명
치악산	2026. 7. 11. ~ 8. 20.	41일	423명
월악산	2026. 7. 17. ~ 8. 17.	32일	280명
북한산	2026. 7. 11. ~ 8. 18.	39일	280명
월출산	2026. 7. 3. ~ 8. 23.	52일	208명
변산반도	2026. 7. 13. ~ 8. 18.	37일	92명
무등산	2026. 7. 11. ~ 8. 31.	52일	208명
태백산	2026. 7. 17. ~ 8. 23.	38일	228명

※ 경주, 소백산, 팔공산은 봄·가을 성수기에 해당

붙임 3

여름 성수기 한시적 허용행위(계곡출입) 장소 및 기간

공원명	허용장소	갯수	허용기간	허용일수
계	15개 공원	110		
지리산	대성(4), 유평(5), 내원(1), 백무(1), 중산리(1)	22	7.1.~8.31.	62일
	달궁(4), 뱀사골(1), 만수천(1), 구룡(1)			
	화엄사(1), 피아골(1), 문수리(1)			
계룡산	동학사(1), 동월(1), 수통골(2), 갑사(2), 신원사(1)	7	7.1.~8.31.	62일
속리산	서원(1), 만수(3), 화양(6), 선유(4), 쌍곡(6), 갈론(1)	21	7.13.~8.30.	48일
내장산	정읍천(2)	6	7.1.~8.31.	62일
	백양(1), 남창(3)			
가야산	홍류동(4), 용기골(1), 마수폭포(1)	6	7.1.~8.31.	62일
덕유산	구천동(3)	3	7.1.~8.31.	62일
오대산	소금강산(1)	1	7.1.~8.31.	62일
주왕산	주방천(1)	1	7.12.~8.31.	51일
치악산	구룡(9), 금대(2), 부곡	12	7.1.~8.31.	62일
월악산	송계(6), 만수(1), 용하(3), 선암(5)	15	7.1.~8.31.	62일
북한산	원도봉계곡(1), 안골계곡(1) 도봉계곡(3), 무수골계곡(1)	7	7.11.~8.17.	38일
	송추계곡(1)		7.1.~8.31.	62일
소백산	삼가야영장 인접 계곡(1)	3	7.1.~8.31.	62일
	남천(2)			
월출산	경포대(1)	1	7.3.~8.23.	52일
무등산	인공폭포(1), 풍암정(1)	3	7.11.~8.31.	52일
	장복천(1)		7.11.~8.23.	44일
팔공산	동화천(1), 지묘천(1)	2	7.1.~8.31.	62일

붙임 4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취사행위), 제11호(오물투기) 또는 제12호(외래동물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20	30	50

붙임 5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위반행위 적발 현황

구분		계	출입금지	불법주차	취사	흡연	야영	음주	오물투기	기타
합계	연중	8,378	2,643	1,972	1,033	136	167	956	896	575
	7~8월	2,480 (29.6%)	654 (24.7%)	808 (41.0%)	364 (38.1%)	41 (30.5%)	51 (30.5%)	80 (8.4%)	309 (34.5%)	143 (24.9%)
'23년	연중	2,927	990	628	364	47	69	292	294	243
	7~8월	900 (30.7%)	275 (27.8%)	260 (41.4%)	139 (38.2%)	18 (38.3%)	25 (36.2%)	19 (6.5%)	111 (37.8%)	53 (21.8%)
'24년	연중	2,718	779	689	353	43	53	373	230	198
	7~8월	752 (27.7%)	125 (16.0%)	300 (43.5%)	138 (39.1%)	11 (25.6%)	6 (11.3%)	37 (9.9%)	83 (36.0%)	52 (26.3%)
'25년	연중	2,733	874	655	316	46	45	291	372	134
	7~8월	828 (30.3%)	254 (29.1%)	248 (37.9%)	117 (37.0%)	12 (26.1%)	20 (44.4%)	24 (8.2%)	115 (30.9%)	38 (28.4%)